

[별표 6] 자동소화시험(제25조의2 관련)

1. 소화시험설비

- 가. 시험모형의 크기는 자동소화장치의 최대설치높이로 하고, 설계방호 체적 이상으로 한다.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높이 지점에 설치하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최대설치높이 지점에 연동하는 소화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설치한다.<개정 2024.7.25.>
- 나.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.09m²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한다.<단서 삭제 2024.7.25.>
- 다. 자동소화장치는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 및 감지부는 시험실 천장으로부터 30 cm 이내에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도록 설치한다.<개정 2024.7.25.>
- 라. 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아니하도록 제24조의 최대높이 확인시험에서 규정된 폭을 갖는 차폐장치를 설치한다.<개정 2024.7.25.>

2. 자동소화시험방법

- 가. 시험은 B급 설계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고 연료는 n-헵탄을 이용한다.
- 나. 소화시험은 0.25 m²의 정사각형, 높이 100 mm, 두께 6 mm의 철제모형에 12.5 L의 n-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mm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1회는 소화시험실 중앙에 , 1회는 하부 개구부로부터 시험실 중심 방향으로 5cm 지점에 설치하여(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방법에 따라 모형과 가장 먼 위치에 설치한다) 총 2회 실시한다.<개정 2024.7.25.>
- 다.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